

일반가약국	등록번호	20260085	홈페이지 예정
	최초 등록일	2026.01.15.	
	최종 등록일	2026.01.15.	

[일반가 약국]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일반가 약국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 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1층 102호(안양동, PROJECT 240 TOWER)

■ 대표전화번호 : 0507-1308-5855 ■ 대표e-mail : dj619tax@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 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 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일번가 약국] 의 가맹 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 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일변가 약국	일변가 약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1층 102호(안양동, PROJECT 240 TOWER)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7.01	한동진	 (비공개)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3-16-51181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 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해당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 사업 영업 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 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 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 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일번가 약국	
상 호	일번가 약국 00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일번가약국	상품분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상품분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일번가 약국”의 상표 등록 준비 중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 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023년						
2024년	1,504,296	1,653,527	-149,230	1,905,714	45,719	38,769

※2024년도 매출은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5.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개인 사업 경영
가맹 사업 관련 임원	한동진	대표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사업 예정	대표	경영기획관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일번가 약국] 가맹점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허가일)
일번가 약국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로부터 현재 출원상태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07.01
- 가맹 사업 시작일 : 개시 예정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번가 약국	일번가 약국	한동진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1층 102호(안양동, PROJECT 240 TOWER)

3. 가맹 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번가 약국	약국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0	1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일번가 약국]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0	0	0	0	0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일번가 약국] 외 기타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서울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부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구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인천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광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전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울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세종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제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 해당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 [일번가 약국]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2024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일번가 약국]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기타	연중				

11. 가맹금 예치

- 당사의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증권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일번가 약국]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계약이행)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 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가맹점주 입문 교육 및 실습 교육)	2,200	계약체결일	훈련 시작일 전 계약 해지	훈련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7,700 (vat 포함)				

2) 보증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계속 가맹금 및 계약 종료 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1.계약 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 사업과 관련된 영업 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합계	10,7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15평, 48㎡)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8,237	1,882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인테리어	미지정	11,550	77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내부공사
전산	미지정	3,300	1,42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간판	미지정	6,600	440	별도 계약	반입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POS	미지정	3,300	220	별도 계약	반입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오픈 초도 집기 비품	가맹본부	2,387	293	별도 계약	반입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오픈 행사비	미지정	1,100	73	별도 계약	반입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 규모 및 물가 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 공사, 전면 유리 및 샷시 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 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 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3.3㎡(1평) 기준으로 일금 이십이십만원(22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번가 약국]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

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 후 반환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 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가맹 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 희망자의 최종 결정

- 당사는 가맹 희망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가맹 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 (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을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약사 자격증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약사 자격증 소지자	- 만 19세 이상일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귀하는 약국 운영 자격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자로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사가 아닌 경우 약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의 보조적, 행정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업체

- [일번가 약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구독료	가맹본부	330	익월 5일	후불로 반환 없음		월정액(부가세포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로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시행 후	정보공개서 p.44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정보공개서 p.44 참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없음		VII.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설치 전 100%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수시 및 정기 교육비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육개시전 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없음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문서기록과 실제량 비교를 통한 재고관리	분기별 1회 (변동 가능)	문의: 가맹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변동 가능)	문의: 가맹본부
매뉴얼 준수	교육 및 점포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수시	문의: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갱신수수료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 사항

-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 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일번가 약국]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예정일 30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 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 ‘양수인’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을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 계약을 종료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부 최초가맹금(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원, 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일번가 약국] 가맹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단위:원)		구분
		상한	하한	
해당없음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일번가 약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일번가 약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별첨2참조)
- 2) 당사가 [일번가 약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 상품 일체	① 당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별 교육 매뉴얼에 따르며, 본사 영업 표지가 부착된 집기에서만 제공할 것 ②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③ 판매를 원할경우 본사와 협의 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타 상품은 ‘가맹본부’와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품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일번가 약국의 타 가맹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및 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				
제3자 유통업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판매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 및 합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약품 및 건강식품, 약국 판매 가능 제품 등	일번가 약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p>‘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의 상권조사 분석 방법 기준에 따라 물리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 요인을 종합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p> <p>가. 물리적 장애: 4차선 이상의 도로(차량 속도 30km), APT, 학교의 외벽, 하천, 고가도로, 산, 공원, 철도, 지하도와 같이 도보 통행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접근에 장애를 주는 것들을 구분.</p> <p>나. 심리적인 장애물 : 보행 시 위험을 느끼는 외벽, 경사도로(15~20°) 이루어진 오르막길, 통행인이 한적하고 기타 요인들로 통행인의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경계 지점.</p> <p>다. 사회, 문화적 장애물: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구획이 지어지는 경향 구분.</p> <p>라. 경제적인 장애물: 소득수준에 따라 이동이 구획되는 경향 구분.</p>	<p>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p>
특수상권	특수상권 내	<p>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p>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 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 합니다.

3) 가맹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

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에게 배달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일번가 약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일번가 약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 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 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 계약 및 갱신 기간

- [일번가 약국] 가맹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 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 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및 협력업체 채무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9조 ①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p>‘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서 제30조의 상품 등의 공급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p> <p>① 운영 중인 약국의 멸실로 더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p> <p>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p>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제41조)

- ①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로 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 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 다)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①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 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 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 계약보다 적게 소요 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일번가 약국]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예정일 3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 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 ‘양수인’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점시 영업활동 지원비, 운영 매뉴얼 제공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 계약을 종료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부 최초 가맹금(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이백이십만 (2,200,000원 / 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 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 최초 가맹금 면제(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 교육훈련비용 납부 - 교육훈련 이수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서면 통지 및 승인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가맹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독립 점포 및 타사 가맹점, 가맹본부 운영을 포함한다)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번가 약국』와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약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를 전문으로하는 매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 제한

- 당사는 [일번가 약국]의 영업 시간 및 영업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영업시간은 오전 08:30부터 저녁 20:00까지로 권장하며, 점포 여건 및 매출 및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2월의 경우 24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고 사전 승인 필요로 함 문의 :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⑩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 점포 (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상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영업이 가능한 인원 (약사 자격증 보유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 점포 (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및 미승인된 사입 품목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서 및 영업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일번가 약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전체 행 사	(a)상품광 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 액 비율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의 경우 (a),(b)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각각의 동의율이 50%를 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내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는 모두 광고에 참여 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역별 가맹점별로 1/N을 하여 분담 한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b)상품광 고+가맹 점모집 광 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 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 하가 50%	증정상품 출하 가 50%	"	"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 비용 50%	판촉물 제작비 용 50%	"	"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판촉 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 계약서 제45조 및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 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 희망자 문의	- 전화 문의 -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	D-46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 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가맹 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점포 개발	- 점포 입지 선정 - 점포 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D-30~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9~26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 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5~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30~1 사이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 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 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p><간판 교체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 개선 : 40%
지급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

	<p>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분할지급 시 절차></p> <p>○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p> <p>☞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p> <p>☞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p> <p>☞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p>
비용부담 제외 사유	<p>○ 점포 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2. 판매 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 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 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 지원	가맹점 오픈 시 오픈바이저 인력 지원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오픈 일로 부터 3일간	인력 지원에 따른 비용	변동 가능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 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 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 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 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일번가 약국]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 당사는 [일번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점 전 교육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프랜차이즈의 이해,接客 방법, 마인드 교육, 제품 판매 교육, 매장 운영 등	이론+실습	오픈 전까지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일번가 약국]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0 일(12h)	2,200	주 1 일 3 시간 교육 × 4 회
수시 교육	1 일(2~4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1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2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교육 인원은 최대 1명까지이며, 1인당 금 일백 일십만원(1,100,000원/부가세포함)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 종료 후 ‘가맹본부’의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별도 재교육 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교육은 3회 이상 불가하며 교육 수료기준 미달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운영권이 상실될 때 ‘가맹본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점명	주소
1	경기	안양일번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1층 102호(안양동, PROJECT 240 TOWER)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개월(182.5일)	

※2024년 7월 1일 개업함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811,428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운영실적 손익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1년 치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산출방식: $1,905,714 \div 182.5\text{일}(6\text{개월}) \times 365\text{일} = 3,811,428$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상품					2024년 기준

별첨 3. 강제구입품목 list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구입권장 품목 list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주의 : 성명, 수령일시와 수령 장소 등 반드시 자필기재]

가맹본부	일번가 약국	영업표지	일번가 약국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가맹점사업자 거주 주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제공받은장소	
제공받은사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아래 작성해주세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해당 광역지방 자체 단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 서명 또는 (인)